##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521

발의연월일: 2025. 2. 27.

발 의 자:김동아·한준호·서삼석

허성무 · 민형배 · 최기상

박희승 • 임미애 • 정성호

정준호 · 김정호 · 복기왕

김우영 · 윤후덕 · 윤준병

전재수 · 정을호 · 김 유

김영호 • 이병진 • 허종식

의원(2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산림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이하 "산림사업법인"이라 함)이 기술인력 및 자본금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사업법인 중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소규모 산림사업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1%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소규모 산림사업법인은 기술인력의 급작스런 퇴직이나 육아휴직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새로운 인력 충원의 어려움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술인력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영업정지 등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산림사업법인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를 면 제함으로써 산림사업법인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제2항제1호 단서 신설).

#### 법률 제 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1호 중 "경우"를 "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요건을 갖춘 산림 사업법인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 ① (생 략)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산림사업법인	②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			
다.			
1.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	1		
건을 갖추지 못한 <u>경우</u> <u>&lt;단</u>	<u>경우</u> . <u>다만,</u>		
<u>서 신설&gt;</u>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요건을 갖춘		
	산림사업법인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